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

(70-2011)

국무총리 훈령 제117호 1974. 4. 29.

소관부처 : 외무부

제 목 : 구주 공동체(EC)지역 주재공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

최근 구주 공동체(EC)는 GNP 대외준비고, 대 역외 무역 등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, 역내 관세철폐, 대외 공동관세 설정 등 역내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"구주 자유무역 연합"(EFTA)과의 협력 등 공동체 세력의 확대를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어 우리의 80년대 경제성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통상, 자본, 기술, 자원 등 제분야에 걸쳐 대 EC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경제외교활동의 전개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다음 제사항을 훈령하니 외무부 장관 주관하에 관계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본 훈령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인원의 배치와 세부규정을 만들고 대 EC 경제 외교강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주 구주공동체 한국대표부 대사(주 브랏셀 대사)를 의장으로 하고 EC 지역 주재공관장으로 구성하는 "구주공동체(EC)지역 주재공관 협의체"

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대 EC 경제 외교 체제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.

2. 협의체는 EC를 비롯한 EC 회원국, 준회원국 및 기타 관련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의장은 이의 종합적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할 것.

가. 자본 협력, 기술협력 등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

나.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

다. 수출진흥 활동 등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

라. 동구권 경제진출에 관한 사항

마. 본부와 구성원간 및 구성원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에 관한 사항

3. 협의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 구주공동체 대표부내에 협의체사무국을 두고 주 구주공동체 대표부 대사가 이를 지휘 감독하도록 할 것.

4. EC 회원국에 주재하는 각 공관장은 상기 협의사항에 관련한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주 구주공동체 대표부 대사와 협의를 거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 통보되도록 할 것.

5. EC 회원국에 주재하는 각 공관의 경제부처 주재관을 포함하는 공관의 경제담당직원과, 무역진흥공사, 각 은행 등 주재기관의 모든 경제 외교활동은 협의체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이 필요로 하여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에 따르도록 할 것.

6. 결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주 구주 공동체 대표부

대사에게 EC 지역 주재공관원이나 주재기관원으로 Task Force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지휘 아래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. 끝.

국 무 총 리